

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

2026년 『청년도전지원사업』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1. 2.

고용노동부 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명: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

□ 사업내용: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
○ ①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·모집 →

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* 제공 →

③ 이수시 국채,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

* 단기프로그램(5주이상), 중기프로그램(15주 이상), 장기프로그램(25주 이상)

□ 지원대상

○ (지자체)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*

*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

- (청년) 구직단념청년*, 자립준비청년**, 청소년쉼터 입·퇴소청년***, 북한이탈청년, 가슴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

*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18~34세)

**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(만18~34세)

***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청년(만18~34세)

□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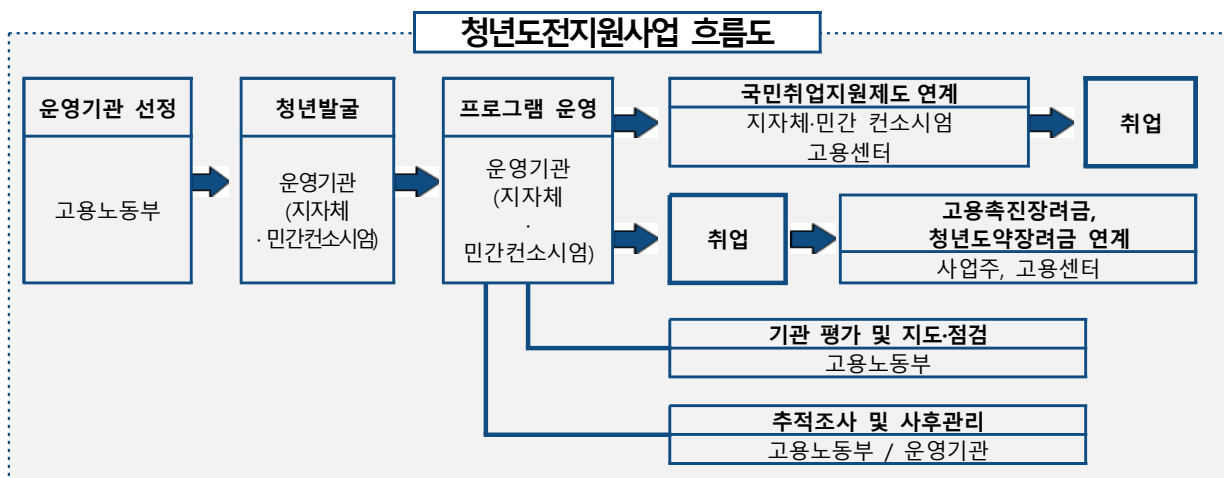
- (지자체) 프로그램 사업비, 인센티브

- (청년) 맞춤형 프로그램, 참여수당, 인센티브

구 분			단기	중기	장기
사업 운영기간			5주 이상	15주 이상	25주 이상
지원내용	지자체	사업비	▶1인당 80만원	▶1인당 240만원(80만원×3회)	▶1인당 400만원(80만원×5회)
		인센티브	▶없음	▶이수 시 10만원 ▶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	▶이수 시 25만원 ▶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
	청년	참여수당	▶1인당 50만원	▶1인당 150만원(50만원×3회)	▶1인당 250만원(50만원×5회)
		이수 인센티브	▶없음	▶이수 시 20만원	▶이수 시 20만원
		구직활동 인센티브	▶없음	▶없음	▶취(창)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
		취(창)업 인센티브	▶없음	▶이수 후 6개월 이내 취(창)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	

□ (지원규모) 구직단념청년 등(목표 13,000명*)

* <단기, 5주 이상> 3천명, <중기, 15주 이상> 6.5천명, <장기, 25주 이상> 3.5천명



□ 지원예산

○ 사업비 지원

-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<지방비 20%(1인당 20만원) 매칭>
-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<지방비 20%(1인당 60만원) 매칭>
- 장기 프로그램은 1인당 400만원 <지방비 20%(1인당 100만원) 매칭>

※ '사업비'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,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

<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>

(단위: 백만원)

목표인원				총사업비 (국비:지방비 = 80:20)			단기 사업비		중기 사업비		장기 사업비	
계	단기	중기	장기	계	국비	지방비	국비	지방비	국비	지방비	국비	지방비
52명	12명	26명	14명	160	128	32	9.6	2.4	62.4	15.6	56	14
							12명× 80만원	12명× 20만원	26명× 240만 원	26명× 60만 원	14명× 400만원	14명× 100만원
78명	18명	39명	21명	240	192	48	14.4	3.6	93.6	23.4	84	21
							18명× 80만원	18명× 20만원	39명× 240만 원	39명× 60만 원	21명× 400만원	21명× 100만원
104명	24명	52명	28명	320	256	64	19.2	4.8	124.8	31.2	112	28
							24명× 80만원	24명× 20만원	52명× 240만 원	52명× 60만 원	28명× 400만원	28명× 100만원
130명	30명	65명	35명	400	320	80	24	6	156	39	140	35
							30명× 80만원	30명× 20만원	65명× 240만 원	65명× 60만 원	35명× 400만원	35명× 100만원
156명	38명	78명	42명	480	384	96	28.8	7.2	187.2	46.8	168	42
							38명× 80만원	38명× 20만원	78명× 240만 원	78명× 60만 원	42명× 400만원	42명× 100만원

※ 단기 : 중기 : 장기= 3 : 6.5 : 3.5 비율로 참여

다만, 지역 여건,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
□ 지원기간: 약정체결일 ~ 2026. 12. 31.까지

□ 지원방식: 지방지자체 경상보조, 약정서 체결방식

2. 사업 추진 체계

STEP 1

-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
- ② 상담, 프로그램(단기, 중기, 장기) 참여

지자체, 운영기관에서
집단·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

STEP 2

사후관리
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
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

국민취업지원제도, 직업훈련,
미래내일일경험, 취업 등 연계

- (상담) 심리안정, 진로 자신감 증진, 대인관계 능력 향상
- (프로그램 참여) 자기소개서·이력서 컨설팅, 진로·직업상담, 1:1 멘토링, 취업역량강화 등
*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
- (참여수당 등 지원)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(참여수당+인센티브) 지급

구분		단기	중기	장기
참여수당		50	150	250
인센티브	이수 인센티브	-	20	20
	구직활동 인센티브	-	-	30
	취(창)업 인센티브	-	50	50

-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연계 가능
*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(30만원)를 지급받은 경우,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

- (추가상담)
 -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
 - ② 중도탈락자 등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·사례관리
- (일경험) 미래내일일경험 연계
- (취업) 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
- (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)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 4억원(청년 5억원)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
 - ▶ 구직촉진수당: 참여자 월 60~100만 원*, 6개월 지원
 - * 가구원 중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(최대 40만원)

3. 제안 요건

☐ 제안기관

- 광역,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-기초지자체 공동

* 직접 또는 영리·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

☐ 대응자금 부담

- 사업비 매칭비율

- 국비 : 지방비 = 80% : 20%

※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,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

4. 신청 절차

☐ 제출기간: '26. 1. 2.(금) ~ '26. 1. 22.(목) 17시 까지(도착분에 한함)

☐ 제안서 접수: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(지)청 지역협력과

- 제출서류(인쇄본 10부, 전자파일)

-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(공고)의
「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」을 참고

- 지원신청서(서식8), 사업계획서(서식9), 예산집행계획서(서식10) 서식을
각 활용하여 작성·제출

- 파일(관련 구비 서류 일체)은 공문 제출 시 첨부

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

- ① 지원신청서(서식8) ② 사업계획서(서식9) ③ 예산집행계획서(서식10)
-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
-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

5. 심사 · 선정

□ 사업 심사·선정

-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'26. 2월 2주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예정
 -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, 예산,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
→ 지자체 동의 후 확정

□ 선정 제한 · 배제
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 - *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(간접)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(간접)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(기업)
-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
-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
-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□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

- 선정결과 공고 : 고용노동부 본부
- 선정결과 통지 :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(지)청에 공문 통지
- 약정서 체결 : 관할 고용노동(지)청과 지자체 간 체결

6. 추진 일정(안)

추진 내용	추진일정
사업 공모(고용노동부)	'26.1.2.
↓	
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(지자체→관할 고용노동(지)청)	'26.1.2.~'26.1.22.
↓	
1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(대표 고용노동(지)청→고용부 본부) 2차(최종) 지자체 심사·선정 (고용부 본부)	~ 25.2.4.(제출) ~ 2월 2주(선정)
↓	
선정결과 통보(본부→지자체) 및 협약체결	~ 2월 4주
↓	
사업실시(지자체)	3월~
↓	
보조금 신청 및 지급(지자체↔대표고용노동(지)청)	1차 : 3월 2차 : 6월
↓	
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·컨설팅 제공(고용노동부, 지원기관)	연 2회
↓	
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(고용노동부, 지원기관)	연 2회
↓	
지도·점검(고용노동부, 관할 고용노동(지)청)	연 2회
↓	
성과평가보고서 제출(지자체) 및 사업평가(고용노동부, 지원기관)	11~12월
↓	
사업 정산 및 확인 (지자체(정산)→관할 고용노동(지)청(확인))	'27.1~3월

7. 기타 참고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공지사항 (공고) 「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」의 내용·서식 참조
-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
-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며,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(☎ 044-202-7714, ☎ 044-202-7494) 또는,
 - 13개 대표 고용노동(지)청 지역협력과로 문의

대표 고용노동(지)청	관할	연락처
서울청	서울	☎ 02-2004-7968
경기청	경기	☎ 031-230-7672
중부청	인천	☎ 032-460-7102
부산청	부산	☎ 051-860-2155
대구청	대구, 경북	☎ 053-667-6173
광주청	광주, 제주	☎ 062-609-8818
대전청	대전, 충남, 세종	☎ 042-470-8315
강원지청	강원	☎ 033-250-1949
창원지청	창원	☎ 055-239-0904
울산지청	울산	☎ 052-228-1985
전주지청	전북	☎ 063-270-9282
목포지청	전남	☎ 061-280-0110
청주지청	충북	☎ 043-299-1393